

상품요약서

(근로자재해공제)

1. 상품개요

□ 근로자재해공제는 조합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상의 지급책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상품

□ 근로자재해공제(보험)과 산재보험과의 비교

구 분	근로자재해공제(보험)	산재보험
법적근거	민법	산업재해보상보험법
운영기관	각 공제조합, 손해보험사	근로복지공단
보상내용	산재보험의 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배상 - (산재초과) 상실수익금 - (산재초과) 향후 치료비 - 위자료 - 기타 소송비용	업무상의 재해보상 - 요양보상 - 휴업보상 - 장해보상 - 유족보상 - 장제비

2. 약관구성

□ 약관구성 = 보통약관 + 추가약관(1개) + 특별약관(5개)



3. 주요 담보내용

가. 보통약관 : 근로자재해공제 보통약관

□ 계약의 성립, 공제료의 납입, 계약의 변경·해지 등 계약관련 일반사항에 대하여 규정

- 주요 보장은 특별약관에서 규정

□ 보상하는 손해의 종류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명기

- 보통약관에서는 일반적인 사항만 명기하고, 특별약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

○ 보상하는 손해

-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이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

○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
- 계약자, 피공제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)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(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고 법령위반사실과 공제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)으로 인한 손해

-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.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

- 근로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무면허운전 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.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

- 피공제자의 원수급인, 하도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. 그러나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공제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

- 피공제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

- 지진, 분화,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

- 전쟁, 침략, 교전, 외국의 무력행위, 혁명, 내란, 테러, 반란, 계엄령선포, 폭

- 동, 소요, 기타 이와 비슷한 사태로 생긴 손해
- 핵연료물질(사용된 연료를 포함)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(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)의 방사성, 폭발성 그 밖에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
- 위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

※ 위 이외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각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나. 특별약관

구 분	주요 담보내용
<p>사용자배상 책임 특별약관</p>	<p>·조합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</p> <p>손해배상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상실수익금 : 재해에 의한 신체상 결함으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 - 향후 치료비 :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비 보상 - 위자료 : 재해근로자 본인 및 친족들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 <p>방어비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송비용 및 협력비용 : 피공제자가 지출한 비용보상 단, 상기 보상액이 보상한도를 초과한 경우는 비율 보상
<p>피재자과실담보 특별약관</p>	<p>사망사고에 한하여 피재자의 총손해액 중 피재자의 본인 과실로 인한 손해를 확장하여 보상하는 특약</p>
<p>공제기간 자동 연장 특별약관</p>	<p>공사장별 계약의 경우 공제료 증가사유 없이 단순히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제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</p>
<p>대위권 포기 특별약관</p>	<p>피공제자가 타인에게 대위권행사가 가능한 경우 조합의 피해자 보상 후 그 타인에 대한 조합의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특약으로 공제증권상 기재된 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함</p>

구 분	주요 담보내용
공제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	공제증권상 기재된 횟수에 따라 공제료를 분할 납입
날짜인식오류 보 상제의 추가약관	컴퓨터, 자료처리기기 등 컴퓨터 관련기기의 기능 이상으로 정확한 달력날짜를 인식, 처리, 구별, 해석 등의 오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함

본 상품 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일부 요약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
공제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